

의안  
번호

59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행정기획위원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6. 04. 16.

전문위원 김 동 성

###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나. 의안번호 : 제592호
- 다. 제출일자 : 2026. 04. 03.
- 라. 회부일자 : 2026. 04. 07.

### 2. 제안이유

-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3조, 제5조, 제7조)

나. 서울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8조, 안 제11조, 제12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6. 02. 26. ~ 2026. 03. 18.

○ 의 견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개요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동물보호 및 관리체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법령 정합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1)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3조, 제5조, 제7조)

- 「동물보호법 시행령」의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동물보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변경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등록인식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상위법 체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2) 동물보호센터 지정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 강화(안 제8조)

- 동물보호센터 지정 기준을 현행화 하고, 「동물보호법」 제35조<sup>1)</sup>의 위임에 따른

##### 1) 「동물보호법」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2.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
  3.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4.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분양
  5.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6. 반려동물사육에 대한 교육
  7.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
  8. 동물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
  9. 그 밖에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⑥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8조2)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청장이 센터를 지정할 때 평가 과정에 민간단체 추천 인사 및 명예동물보호관의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상위 법령 및 서울시 조례와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센터 지정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3) 용어 정비 및 보호·분양 절차 명확화(안 제11조, 제12조)

- “입양”을 “분양”으로 변경하여 상위법과 용어를 일치시키고, 구조된 동물은 원칙적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도록 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간단체에 보호조치를 맡길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또한 소유권이 구로 귀속된 동물의 처리 및 분양 절차를 정비하여 「동물보호법」 제45조 등 관련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한 것임.

### □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 및 인용 규정을 정비하고, 동물보호 행정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법령 체계 정합성 확보와 제도 개선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또는 시·군·구에 운영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2)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3.3.27.>
-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동물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평가에는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 추천인사 및 명예동물보호관이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1., 2023.3.27., 2023.10.4., 2023.12.29., 2025.1.3.>
- ④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자치구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7.9.21.>
-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7.9.21.>
-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해당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삭제 <2017.9.21.>

- 특히 동물보호센터 지정 시 동물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외부 참여를 의무화한 것은 행정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또한 용어 정비와 보호·분양 절차의 명확화는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장 운영 과정에서의 해석상 혼선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